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반가족의 범위 확대〉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37호)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문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년 5월 30일

3.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III.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동반가족의 범위¹⁾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동반가족”이란 <u>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동반가족”이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를 말한다.</u> <u>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u> <u>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u> <u>다.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u>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u>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u> <u>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u> <u>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u> <u>속 1명과 그 배우자</u>
--	--

현재 정부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음.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은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1992년 10월 최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바, 2007년까지는 ‘사할린동포 1세’만을 영주귀국대상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사할린동포 1세 외에 ‘배우자 및 장애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영주귀국 사업 대상에 포함하였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법의 제정에 따라 동반가족의 범위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다가 법률 개정(2024. 7. 17. 시행)에 따라 현재 동반가족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자녀와 그 배우자가 사망 등으로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생존한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귀국을 전제로 하여 그 동반가족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할린동포가 사

할린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가족은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현황 >

입국년도	'90~'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계
인원수 (명)	4,116	74	103	83	11	9	3	9	0	334	344	254	268	5,608

주1) 영주귀국 인원은 '25. 6. 기준 총 5,608명으로, 사망 및 역귀국자 제외시 국내 체류 인원은 3,042명으로 추산

주2)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입국, '22년 선정자는 ' 23년 입국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사할린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고령화로 사할린동포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할린동포 1세 사망 시에도 2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재 사할린동포 2세에 대한 영주귀국 지원 여부가 사할린동포 1세의 생존 여부에 종속되어 있는바, 영주귀국 기회가 1세의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²⁾.

2)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 신청 접수 후, 지원대상자 선정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해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2023년 5명, 2024년 3명, 2025년 8명)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될 경우 영주귀국을 위한 입국 인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영주귀국자에게는 항공료 45만원, 초기정착비(집기비품비) 140만원, 임대보증금 885만원 등 1인당 1,070만원을 입국 시 1회성으로 지원하고, 특별생계비³⁾로 매월 1인당 7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정착지원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음.⁴⁾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현황>

- ☐ 특별생계비: 매월 1인당 75,000원 지원
-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2인 1가구 기준 17,700,000원(1인 8,850,000원)
- ☐ 항공료(45만원) 및 집기비품비(140만원): 1인당 1,850,000원
- ☐ 복지급여 지원
 -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복지급여를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범위 특례에 따라 선정 시 해당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령
 - 소득평가액(소득만 산정) 산정 후 급여 결정
 - 특별생계비(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미산정
-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2세)의 경우
 - 국적 취득 시 사할린동포와 동일 특례 적용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 최대 3년 범위 내 보장

※자료: 재외동포청

3)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관리비 지원비임.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부모사망 사할린동포 2세를 영주귀국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신규로 필요한 초기 비용은 1인당 약 1,0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재외동포청은 사할린 동포단체의 자체 실태조사를 근거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영주귀국 수요를 러시아 전 지역에 걸쳐 2,000~2,5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63

【참고자료】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관련 추진 경과

시기	주요내용
1989년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시작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영주귀국 시작
1993년	경북 고령군 대창양로원에 사할린동포 50여명 입소
1994년 3월,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원논의 결과 「영주귀국 시범사업」으로 『500세대 사할린한인 전용 아파트』 및 『100명 수용 요양원』 건립 추진 합의 (우리측 건립부지 제공, 일본측 건설경비 지원)
1997. 12월 ~ 1998. 9월	82가구가 영주귀국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42가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0가구) 등에 입주
1999. 2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요양시설, 100병상)’ 완공
1999. 12월	건설교통부 주관(주택공사)으로 안산시에 영구임대주택 건립 ※ 안산에 대규모 사할린한인 거주지를 조성하는 대신 국가가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의 안산시 부담금을 지원
2000. 2~3월	안산시 고향마을 사할린 한인 아파트 489세대 960명 입주
2007 ~ 2009년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사할린1세 및 배우자, 장애인자녀) ※ 약 2,000명(2007년 611명, 2008년 647명, 2009년 837명) 영주 귀국
2010~2015년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 당초 영주귀국 확대사업은 3년간 실시 후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잔류 1세들의 영주귀국 희망 등을 감안하여 2010년 이후에도 한·일 공동으로 영주귀국 사업 추진
2016년 이후	2015년 말로 한일 공동 영주귀국사업은 종료하며, 2016년부터 우리 정부 단독으로 매년 15명 이내 소규모로 실시
2021. 1.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